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2.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
- 제출일자: 2020. 4. 9.
- 회부일자: 2020. 4. 9.
- 검토기간: 2020. 4. 10. ~ 2020. 4. 17.

2. 개정이유

- 캠핑장비 대여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용료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달서구 내 병역명문가와 다자녀가정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한편, 시설 예약자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달서구 내 병역명문가와 다자녀가정 추가(안 제5조제2항)
- 나. 시설예약과 관련하여 사용료 납부기한에 맞도록 문구 수정(안 제7조제2항)
- 다. 캠핑장비 대여료 조항 추가(안 별표)

4. 관계 법령: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2019년 3월, 집행부는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예우하는 지원책의 하나로 구 공공시설(달서별빛캠프 포함)사용 시, 이들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한 바 있음.
 - 당시, 본 개정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도,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에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제5조제2항 제5호)토록 함께 개정한 바 있음.
- 한편, 현재 달서구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외) <아이조아 카드 소지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장기 기증자>에게도 구 공공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해 시행 중인 조례¹⁾가 다수 있음.
- 본 조례안은 구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로 규정한 협행 달서구 여타 조례에 맞추어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및 <아이 조아 카드 소지자>에게도 새로이 캠핑장사용료 중 20%를 감면(안 제5조)토록 하는 한편,

1)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달서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5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구청장은 장기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4.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캠핑장비 대여료 규정을 신설(안 별표)하는 등, 현 캠핑장 운영의 내실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조문들을 살펴볼 때, 캠핑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 달서구 타(他) 조례에서 감면 대상자로 규정한 조문에 맞추어, 동 캠핑장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감면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바, 개정안 전체에 대해 특별히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에 대한 관련 조례 추가 개정 권고 의견

- 이처럼 <아이조아 카드 소지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장기 기증자>들은 모두 구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현행 달서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개별 조례의 정비 지연으로 실제 감면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다수 있는 바, 이들 미(未) 정비된 개별 조례들에 대해 관련 감면 규정을 집행부는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조례 중, 금번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장기기증자>가,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에는 <병역명문가증 소지자>가, 「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아이조아카드 소지자>가 각각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 조례들의 조속한 정비(개정)가 요구됨.

- 나아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여타 시설들에 대한 사용료(이용료) 부과 관련 조례들 중에도 감면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사례들이 없는지? 특히 복지문화국은 종합적 재점검과 함께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됨.